

# 入養制度의 問題點과 改革의 必要性

金 麟 洙\*

## I. 머 리 말

우리 民法上의 養子制度는 종전의 전통적인 家系繼承을 위한 養子制度를 骨幹으로 하면서 그것을 다소 完化시킨 형태로서, 전통적 養子制度의 특색인 異姓不養과 昭穆之序를 깨고 異姓養子와 女子養子를 인정하는 등 고식적 전통적 養子制度를 변형시키기는 하였지만, 社會福祉政策의 일환으로서 큰 몫을 차지하게 되는 父母 없는 子에게 父母를 안겨준다는 ‘子를 위한 養子制度’가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도 많다.

근래에 와서 棄兒의 발생이 급증하면서 海外入養兒童數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國內의 施設收容의 兒童數는 오히려 줄고 있으며, 國內入養도 부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養子에 대한 의식이 奉祀者를 세운다는 데에 養子制度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아직 머물러 있는 데 기인한다고 보며, 또 우리 民法上의 養子制度가 이러한 棄兒나 保護施設에 있는 兒童을 入養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入養特例法이 제정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兒童들에 대한 入養에 특별한 배려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法 역시 國內入養을 늘리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1978년의 한해 동안 9,680명의 棄·迷兒가 발생하여 시간당 1.1명 꼴이던 棄·迷兒數가 5년 후인 1983년에는 15,243명으로 급증하여 시간당 1.87명을

\* 延世大 法學科 教授

기록한데 이어, 1984년에는 동년 6월말 현재 9,215명으로 시간당 2.1명을 기록함으로써 6년 사이에 2배로 격증하고 있다.

棄·迷兒發生의 급격한 증가는 海外入養의 증가를 가져와서, 1983년 한해 동안에 하루 평균 20.6명씩 모두 7,158명이 유럽·美國 등지에 海外入養되었으며, 1984년(9월말까지)의 海外入養數가 6,000명을 넘어서 하루 평균 22명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海外入養이 棄·迷兒發生數 증가와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保健社會部에서는 産業化와 都市化에 따라 사회적인 性風紀의 문란행위가 늘고 傳統的인 家族觀念이 해이해져 주로 未婚母들이 낳아서 버리는 棄兒의 발생이 많아지는 데다가 영세민 家庭에서 子女養育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늘어나서 棄·迷兒 발생이 위와 같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海外入養兒童數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棄·迷兒의 發生增加가 海外入養 급증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國內의 血統을 중시하는 傳統意識 때문에 棄·迷兒의 入養을 꺼리는 데에도 있지만, 政府가 운영하는 각종의 兒童收容施設이 되도록 적은 收容人員으로 良質의 福祉惠澤을 준다는 이유로 收容兒童數를 줄이는 政策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sup>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우선 이러한 棄·迷兒에게 따뜻한 家庭을 안겨 주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전통적 養子意識을 改부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養子法의 改革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外國의 養子制度에 눈을 돌려 보면, 여러 나라들의 養子制度는 근래에 와서 눈부시게 進展하여, 養子の 生家와의 斷絶과 養家에 있어서의 養子の 完全親生化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完全養子制度’가 全世界的인 규모로 실현되고 있다.<sup>2)</sup>

우리나라의 養子法은 入養에 의하여 養子は 養父母의 血族과 關係도 血族間에 있어서와 同一한 親族關係를 발생하게 하는 점(民法 772조)에서 外國法의 入養效果가 원칙적으로 養親子間에만 생기고, 養親의 血族에는 미치지

1) 東亞日報 1984年 11月 14日 11면 참조.

2) 完全養子の 意義에 대해서는 別장 참조.

않는 것으로 한 것에 비하여, 養子의 養家에서의 親生化 내지 法定血族化라는 점에서 한 발짝 앞서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外國의 完全養子制度 등의 채용에 의하여 우리나라 養子法은 그러한 점에서도 크게 뒤떨어지게 되었다.

## II. 現行法上の 養子制度概觀

### 1. 民法規定

#### 1) 傳統的 養子制度

民法이 제정되기 전의 우리나라 慣習上の 養子制度는 17세기 후반에 청어 들면서 中國의 宗法制가 우리나라에 定着하여 確立된 것으로 보인다.<sup>3)</sup> 그것은 中國의 영향을 받아서 祖上の 祭祀를 주재하고 家의 繼承을 위한 이른바 '家를 위한' 養子制度만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 慣習上の 養子制度의 특색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養親은 既婚男子이어야 한다. 未婚男子나 女子는 世代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② 直系卑屬男子가 없어야 한다. 女子는 家의 繼承權이 없으므로 女子는 養子が 될 수 없었으며, 일부 兩班階級에서는 庶子が 있는 경우에도 入養을 하는 데가 있었다.

③ 養子は 한 사람에게 한한다. 그것은 家의 繼承權者가 한 사람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

④ 養子は 養父와 同姓同本の 血族으로서 子와 同一한 行列에 있는 男子로서 近親의 子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異姓不養, 昭穆之序라고 한다. 그러나 昭穆之序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 일이 있다. 이른바 次養子<sup>4)</sup>와 白

3) 崔在總, 「韓國家族制度史研究」, 1983, pp. 588~768 참조.

4) 次養子란 子가 없는 者가 養子를 하여, 養子は 婚姻을 하였으나, 이 養子 또한 子가 없이 死亡한 경우에, 亡養子를 위하여 養子를 選定하여 (따라서 當主를 위해서는 孫子行列者를 求하는 것이 原則이다. 孫子行列에 적당한 者가 없으면, 當主의 行列者에서 養子를 選定할 수 밖에 없다), 立後하는 것이다. 이 두번째의 養子의 地位가 문제인데, 첫번째의 養子가 次養子에 의하여 死後에 宗子의 地位가 廢하여지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 되었기 때문에, 次養子에는 同地位를 주어 祭祀를 擧行시켜 그에게서 子가 出生하면, 그 子로하여금 첫번째의 養子의 뒤를 서식 祭祀를 승계시켜서 次養子は 生家로 復讐하는 것으로 落着되었다.

骨養子<sup>5)</sup>(孫子行列에 있는 者를 入養하는 것)가 그것이다.

⑤ 死後養子와 遺言養子라는 것이 있다. 家의 繼承에 그 목적이 있으니만큼, 養父가 死亡한 후라든가 養父의 遺言에 의하여 死後에 養子가 養家에 入籍될 수 있다.

民法은 이러한 순전히 家의 繼承을 위한 養子制度 이외에 이른바 ‘아버이를 위한’ 또는 ‘자를 위한’ 養子制度를 새로 채용하였다. 그러나 民法은 家를 繼承하기 위한 養子制度를 그 基幹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近代法的 理念과는 거리가 먼 養子法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2) 現行 民法上의 養子制度

民法이 종래의 慣習을 받아들인 규정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戶主相續을 하는 養子는 養父와 同姓同本의 血族이어야 하는 것(民法 877조 2항)

② 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는 本家의 系統을 繼承하는 경우 이외에는 入養할 수 없는 것(民法 875조)

③ 戶主가 된 養子는 罷養을 할 수 없는 것(民法 898조 2항)

④ 死後養子와 遺言養子를 인정하는 것

그런데 民法이 종래의 慣習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른바 ‘아버이’ 또는 ‘자’를 위한 養子制度의 채용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① 舊法에서는 養親이 既婚男子에 한하였으나, 現行法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成年者라면 既婚이건 未婚이건 또는 男子이건 女子이건 모두 자유로이 養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養親이 戶主로서 戶主相續을 위한 養子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既婚者일 必要가 없으며, 女戶主도 養子할 수 있다.

② 舊法에서는 入養當事者 중 養親은 養父, 즉 夫에 限하였으나, 現行法

5) 白骨養子란 실제로는 養孫이라고 稱하며, 養親이 되는 者와 같은 行列에 있는 者는 경우(養子로 할者가 있어라도 매우 遠親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에는, 부득이 昭穆相當의 者를 養子로 하여금 뒤를 잇게 하는 것이다.

에서는 夫婦가 共同入養當事者이다. (民法 874조)

③ 舊法에서는 直系卑屬男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入養을 할 수 있었지만, 現行法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男女를 묻지 않고 養子를 할 수 있으며 無子란 條件이 필요 없다.

④ 舊法에서는 養子가 한 사람에게 한하였지만, 現行法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며 얼마든지 養子를 할 수 있다.

⑤ 舊法에서는 養子가 되기 위하여 養父와 同姓同本の 血族이어야 하였지만 現行法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며 異姓도 무방하다. 다만, 戶主相續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養子가 養父와 同姓同本の 血族이어야 한다. (民法 877조 2항)

그리고 舊法에서는 원칙적으로 昭穆之序에 의하여 子와 같은 行列에 있는 者가 아니면 안되었으나, 그러한 制限이 없고, 다만 尊屬과 年長者가 아니면 된다. (民法 877조 1항)

⑥ 現行法은 舊法에서와 같이 死後養子를 인정하였으나, 死後養子에 있어서는 그 內容이 약간 달라지고 있다. 즉, 舊法에서의 死後養子에 있어서는 養親이 男戶主에 한하였으나, 現行法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女戶主가 死亡한 경우에도 死後養子를 선정할 수 있다.<sup>6)</sup> 또 舊法에서는 直系卑屬男子가 없으면 直系卑屬女子가 있는 경우라도 死後養子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現行法에서는 女子도 戶主相續權이 있으므로, 家族인 直系卑屬女子가 있는 경우에는 死後養子가 선정될 수 없다.

⑦ 舊法에서는 入養에 戶主와 父母의 同意가 필요하였으나, 現行法에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없다.

⑧ 이 이외에 孀養子가 새로 인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改正은 앞에서 말한 家를 계승하기 위한 養子制度 이외에 ‘어버이’ 또는 ‘子’를 위한 養子制度가 채용되었기 때문이다.

6) 入夫婚姻의 경우 같은 때에 女戶主를 위한 死後養子の 選定이 必要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戶籍法 66조가 死後養子の 選定權者를 ‘妻’라고 하고 있는 것은 立法의 잘못이며, ‘配偶者’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2. 入養特例法

### 1) 序 說

入養特例法은 종전의 施行되던 孤兒入養特例法이 너무도 未備하였기 때문에, 그 法을 보완하고 不遇兒童의 國內入養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法의 提案理由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保護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不遇兒童의 入養節次를 간소화하고 養子로 된 者는 養親의 姓과 本을 따르게 하는 등 民法에 대한 特例를 정하는 동시에 現行 孤兒入養特例法에 의한 國外入養의 추진에 있어서의 未備點을 補完하여 이를 이 法에 포함시킴으로써 당해 不遇兒童의 國內入養을 추진하고 養子로 되는 者의 安全과 福利를 增進하기 위한 것임'

### 2) 養子될 資格要件

養子될 資格에 대해서는 民法規定에는 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는 本家(즉 戶主의 本家)의 系統을 계승하는 경우에 한하여 養子が 될 수 있다(民法 875조)는 制約과 養子は 養親의 尊屬 또는 年長者가 아니어야 한다(民法 877조 1항)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入養特例法에서는 養子될 資格에 制限이 엄격히 과해지고 있다. 즉 이 法에 의하여 養子が 될 者는 兒童福祉法에 의한 兒童福祉施設과 生活保護施設에 있는 18세 미만의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資格있는 者로서 다음과 같은 者를 열거하고 있다. (入養特例法 2조 1항)

- ① 保護者로부터 離脫된 者로서 판할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가 扶養義務者를 확인할 수 없어 保護依頼한 者
- ② 父母가 入養을 同意(父母가 死亡 기타 事由로 同意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尊屬의 同意)하거나 後見人이 入養을 同意하여 保護依頼한 者
- ③ 法院에 의하여 親權喪失의 宣告를 받은 者의 子로서 道知事가 保護依頼한 者
- ④ 기타 扶養義務者가 알려져 있지 않은 者

위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者는 入養特例法에 의하여 入養이 가능한데, 이러한 資格을 가진 者는 民法에 의하여 入養의 제한되고 있는 戶主나 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도 養子로 入養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入養의 門을 넓히고

있다.

### 3) 養親될 資格要件

養親이 될 資格에 대해서는 民法에는 成年者이어야 한다는 것(民法 866조) 이외에는 制限이 없다. 따라서, 成年者이면 男女·既婚·未婚·有子·無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養親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入養特例法에서는 養親이 될 資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入養特例法 3조)

- ① 養親이 될 者의 本國法에 의하여 養親이 될 수 있는 者일 것
- ② 養子를 扶養함에 충분한 財産이 있을 것
- ③ 養子를 賤業·苦役 기타 人權유린의 우려가 있는 職業에 使用하지 않을 것
- ④ 養子에 대하여 宗教의 自由를 인정하고 社會의 一員으로서 그에 相應한 養育과 敎育을 할 수 있을 것

그런데, 養親이 될 者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법에 의하면 入養알선기관이 入養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機關이 養親이 될 사람에게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상세히 조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入養特例法 11조 1항) 이 법에 의하여 入養할 경우, 入養알선기관을 반드시 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추면 養親이 大韓民國 國民인 경우에는 戶籍法에 정한 바에 의하여 入養申告만 하면, 戶籍公務員에 의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入養의 效力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로서는 ‘養子를 賤業·苦役 기타 人權유린의 우려가 있는 職業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로서는 이 법의 목적인 ‘養子로 되는 者의 安全과 福利增進을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7) 入養申告를 할 때에 ‘養親될 者의 家庭狀況의 관한 書類’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入養特例法 6조 2항 2호), 다음 各條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同施行令 3조)

- ①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
  - ② 兒童福利法施行令 제 2조의 規定에 의한 兒童相談所 또는 兒童入養委託施設의 長
  - ③ 이 법 제10조의 規定에 의한 入養알선기관의 長
  - ④ 기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者
- 위와 같이, 養親이 될 者의 資格을 증명할 수 있는 者를 明文化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形式化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養子될 者의 福利增進을 위한다면, 入養申告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家庭法院의 許可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入養알선기관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는가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4) 入養의 同意

入養特例法에 의하여 養子が 될 수 있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父母의 同意를 父母가 死亡 기타 事由로 同意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直系尊屬의 同意를, 父母나 다른 直系尊屬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入養特例法 4조 1항 本文) 다만, 이 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者(父母가 入養을 同意하거나 後見人이 入養을 同意하여 保護依頼한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保護依頼時의 入養同意로써 入養의 同意에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同法 4조 1항 但書)

15세 이상인 者를 養子로 할 때에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入養同意의 외에 當然 養子로 될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同法 4조 2항)

養子로 되는 者를 위하여 後見人이 入養의 同意를 할 경우에 親族會의 同意가 필요없다. (同法 4조 3항) 民法의 경우에는 養子로 될 者가 15세 미만으로서 後見人이 代諾할 경우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民法 869조), 15세 이상인 者에 대하여 入養을 同意할 경우에는 親族會의 同意가 필요없도록 하고 있다. (民法 871조 참조)

#### 5) 入養取消請求의 制限

入養特例法에 의하여 入養되었을 때에는 民法規定의 적용을 배제하여 入養取消의 訴를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이 法에 의하여 1년이 경과된 때에는 養子·養親·親生父母 기타 關係人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入養取消의 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同法 5조)

① 略取 또는 誘引에 의하여 保護者로부터 離脫되었던 者가 養子로 된 때

② 詐欺 또는 強迫으로 인하여 入養의 意思表示를 한 때

위와 같이 入養取消의 訴의 提起期間을 制限한 것은 養親子關係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養親子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데에 기인한다. 入養特例法



에 의한 入養의 取消은 入養의 效力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取消權이 소멸하므로, 民法 제889조 내지 제896조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다.

#### 6) 國內入養의 경우의 申告

養親이 大韓民國의 國民인 경우에 있어서의 入養은 戶籍法에 정한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 (同法 6조 1항) 이 規定이 立法上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入養申告는 養親이 養子로 될 者의 後見人과 함께 書面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게 되어 있다. (同法 6조 2항)

- ① 養子로 된 者가 제2조 제1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임을 증명하는 書類<sup>8)</sup>
- ② 제 2 조의 規定에 의한 養親이 될 者의 家庭事項에 관한 書類<sup>9)</sup>
- ③ 제 4 조의 規定에 의하여 入養을 同意한 事實을 증명하는 書類<sup>10)</sup>

그런데 15세 이상의 養子が 入養할 경우에는, 民法規定에 의하면 養子로 될 者가 入養當事者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民法 878조 참조), 그것이 당연한 것임도 불구하고, 養子로 될 者를 入養의 客體로 한 것은 立法論으로서 타당하지 못하다.

이와 같이 養親이 될 者가 養子를 할 때에는 入養申告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養子로 할 者를 親生子로 出生申告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法解釋論으로도 문제가 있고, 大法院 判決도 그동안 유동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大法院判決은 入養申告 대신에 親生子로 出生申告를 한 데 대하여 入養의 實質的 成立要件을 갖추고 있는 한, 入養의 效力을 가진다고 判示하고 있다.<sup>11)</sup>

이와 같이, 養子로 하려는 子를 자기의 親生子로서 出生申告를 하는 것은 정덕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보육함으로써 自己의 親生子와 똑 같은 애정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戶籍上으로도 親生子로 하고 싶은 심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父母의 심정은 충분히 동정할만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8) 書類作成要領에 대해서는 施行令 제 2 조의 規定과 施行規則 제 1 조 참조.

9) 書類作成要領에 대해서는 施行令 제 3 조의 規定과 施行規則 제 2 조 참조.

10) 入養同意書를 作成하는 要領에 대해서는 施行規則 제 3 조 참조.

11) 大法院判決 1977.7.27, 77 다 492, 判例研究, 金崎殊 虛偽親生子出生申告에 의한 入養의 效力, 「法律新聞」 1253號(1977.12.26)

養準正 *légitimation par adoption* 이라고 한다. 그러나 英國(1975년)이나 소련(1943년)에서는 養子에 대하여 특별한 명칭을 法律上 쓰고 있지 않다. 다만 英國에서는 學說上 '完全養子' *full adoption* 의 명칭이 쓰여지고 있으며, 소련에서는 完全養子를 인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入養의 명칭은 여러가지이지만, 보통 生家父母와 단절하지 않는 養子를 普通養子(單純養子·直接養子·獨立養子·非斷絶養子라고도 한다) 生家父母와 단절하지만, 養家에서는 普通養子와 다르지 않는 養子를 斷絶養子(絶縁養子·例外養子 *adoption exceptionnelle* 라고도 한다), 生家父母와 단절하고, 養家에서는 完全親生化하는 養子를 完全養子(또는 準正養子)라고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15)</sup>

#### IV. 結 語

完全養子制度는 오늘날 국제적인 조류이다. 이와 같이 볼 때에 養子法의 장래는 養子の 完全親生化를 향한 무한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親子關係는 人倫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親族·相續法 및 刑法 등의 法制에서의 基本이기도 하다. 따라서, 完全養子를 法制化하기 위하여 法律上의 親子關係를 인위적으로 단절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國民的인 合意를 얻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完全養子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戶籍制度의 體系에서는 技術的으로 어려운 문제가 가로 놓여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外國이 비교적 간단하게 生家父母와의 關係斷絶을 인정하고, 그 때문에 생기는 身分證錄簿의 形式과 信團의 犧牲을 감수한 것은 養子로 되는 者의 利益(幸福)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며, 거기에는 兒童의 人權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人權尊重思想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도 진정한 人道主義的 見地에서 完全養子の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5) 상세한 것은 金剛珠, 養子制度의 比較法的 考察, 「司法行政」 293號·294號(1985年 5月號·6月號) 참조.